

의안번호	제2927호
의 결	2025. . .
연 월 일	(제 회)

의결사항	
------	--

고성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	이쌍자 의원 등 5인
발의연월일	2025. 3. 21.

고성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이쌍자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927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3. 21.

발 의 자 : 이쌍자, 김향숙, 김원순,
김석한, 정영환 의원(5인)

1. 제안이유

이 조례는 고성군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소관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위원회 설치를 임의규정화하고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시행계획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 변경(안 제4조)
- 나. 위원회 설치에 관한 방법 변경(안 제7조)
- 다. 안건 발생 시 비상설 위원회 구성 및 심의·의결 후 자동 해산에 관한 사항 변경(안 제9조)
- 라. 비상설 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삭제(안 제10조)
- 마. 비상설 위원회 회의 소집 방법 변경 및 삭제(안 제12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여성농어업인 육성법」

나. 입법예고: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5-18호

- 예고기간: 2025. 3. 21.(금) ~ 2025. 3. 27.(목) [6일간]

- 예고결과: 의견 없음

4. 본문: 붙임과 같음

고성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고성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해야 한다”를 “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 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제7조 중 “위하여”를 “위하여 제9조제5항의 방법으로”로 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부군수가”를 “농업기술센터소장이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, 심의·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.

제10조를 삭제한다.

제12조의 제목 “(회의)”를 “(위원회 운영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.

- ① 위원장은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제5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서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이 조례 시행일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시행계획수립 및 협조) ① 군수는 「여성농어업인 육성법」 제5제 제3항에 따른 경상남도 여성농어업인정책에 관한 기본 계획을 기초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<u>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· 시행해야 한다.</u></p>	<p>제4조(시행계획수립 및 협조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시행계획을 수립· 시행 할 수 있다.</u></p>
<p>제7조(위원회 설치)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정책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련된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<u>고성군 여성농 어업인육성위원회(이하“위원 회”라 한다.)</u>를 둔다.</p>	<p>제7조(위원회 설치) ----- ----- ----- -----<u>위하여 제9조제5항의 방 법으로</u>----- -----.</p>
<p>제9조(구성) ②위원장은 <u>부군수가</u>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③ ~ ④ (생략) <u><신 설></u></p>	<p>제9조(구성) ② -----<u>농업기술센 터소장이,</u> ----- ---. ③ ~ ④ (현행과 같음) <u>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, 심의·의결 후 자동 해 산한다.</u></p>

제10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촉직 위
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
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
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
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12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
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
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
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
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
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③ · ④ (생략)

<삭 제>

제12조(위원회 운영) ① 위원장
은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
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
의를 소집한다.

② <삭 제>

③ · ④ (현행과 같음)

관 계 법 령(발췌)

□ 여성농어업인육성법

제5조(기본계획의 수립)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여성농업인육성정책 또는 여성어업인육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, 특별시장·특별자치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·도 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 또는 시·도 여성어업인육성기본계획(이하 “시·도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각각 수립하여야 한다. <개정 2005. 8. 4.,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21. 11. 30.>

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, 시·도지사는 시·도계획에 따라 각각 연도별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고 그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 3. 17., 2013. 3. 23.>